

2006년 생활임금법

컬럼비아 특별구(D.C.) 법전 2-220.01~2-220.11조

신규 계약 또는 정부 지원을 받는 수혜기관은 해당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및 하청업체에 현재 생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생활 임금은 시간당 \$17.50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D.C.의 최저 임금 및 생활 임금이 시간당 \$17.95로 인상됩니다.

생활 임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금액 \$100,000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모든 수혜기관,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로부터 수혜기관이 받는 자금에서 \$15,000 이상을 수령하는 모든 하청업체
- 금액 \$100,000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수혜기관,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로부터 수혜기관이 받는 정부 지원금에서 \$50,000 이상을 수령하는 모든 하청업체

"계약"이란 수혜기관과 D.C. 정부 간의 서면 계약을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이란 D.C. 정부의 기관, 위원회, 대행기관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재정적 혜택을 제공 받는 보조금, 대출 또는 조세담보금융(TIF)을 의미합니다.

"소속 직원"이란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로부터의 정부 지원이나 계약을 통해 직접 보수를 받는 수혜기관에 고용된 모든 개인을 의미하며,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 소속 직원, 또는 정부 지원이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혜기관의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소속 직원"이라는 용어에는 계약 또는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단지 간헐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계약업체, 수혜기관 또는 그 외의 사유로 하청업체에 고용된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연방법에 따라,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이 적용되는 계약 또는 협약, 2) 기존 및 향후 단체교섭협약 중 향후 계약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 규제 대상 공공 서비스 사업자가 수행하는 전기, 전화, 수도, 하수도 계약, 4) 시장이 선포한 재난 또는 임박한 위협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서비스 계약, 5) 교육생에게 사례관리, 직업준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기관과 체결된 계약 중 교육생이 직원을 대체하지 않는 경우, 6) 학교 방학 중 고용된 22세 미만의 직원 또는 정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당 2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7)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거나 개선된 부동산을 점유하는 세입자 또는 소매 시설 중 D.C.의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8) 50명 이하의 개인이 고용되어 있고 501(c)(3)의 지위에 해당하는 비영리 조직의 직원, 9) Medicaid 수혜자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중 해당 서비스가 재택 간병 기관, 지역 거주시설, 또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이들 용어는 1983년 「의료 및 지역거주시설, 호스피스 및 재택 간병 면허법」 제2조 및 컬럼비아 특별구 법전 44-501조의 정의에 따름), 10) 관리 의료 기관과 건강 관리 안전망 관리국 또는 Medicaid 지원 관리국 간의 건강 서비스 제공 계약 또는 협약

재택 간병 최종 규칙: 노동부는 재택 간병 종사자와 동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산업에 속한 고용주는 이제 기록 보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혜기관의 각 수령인과 하청업체는 본 통지 내용이 적용되는 각각의 소속 직원에게 본 통지문을 전달하고, 또한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본 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모든 수혜기관 및 하청업체는 컬럼비아 특별구 법률에 따라 정규 업무 과정에서 생성, 유지되는 급여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Office of Wage-Hour, 400 Virginia Ave., SW, 4th Flr, Washington, D.C. 20024, 전화: (202) 671-1880, 온라인으로 클레임 제출: does.dc.gov, "File a Claim(클레임 제기)" 탭으로 이동.